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23.(금) 행사시작(14:00)이후	배포 일시	2022. 12. 23.(금)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장	장은섭	(044-202-3210)
		담당자	사무관	위윤화	(044-202-320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해 시범인증 부여한다 - 이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에 최초로 품질인증 부여 -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 부여하는 제도(2022년 시범사업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품질향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시범적으로 부여하였다.
- 올해 새롭게 실시한 품질인증제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 기준을 규정하는 기존의 평가제도와 달리,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충족여부를 심사하였다.
-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품질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품질인증제 본격도입에 앞서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관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 9월 시범사업 계획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신청한 총 53개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심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4개의 제공기관을 최종 시범 인증하였다.
- 1개 인증항목이 부적합하였으나 이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한 1개 기관은 조건부 인증을 부여하여, 보완 여부의 확인 및 추가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시범인증 제공기관 목록 (붙임 참고) >

* 가나다 순 정렬

	아동청소년심리지원(1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5)
대상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내용	<표준모델 기준> 언어·놀이·미술·음악·심리상담 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부모교육(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인증 제공기관 (14)	리앤리 언어심리학습치료센터 마음샘 언어심리센터 성장놀이터 티움 에셀나무예술심리센터 엘림아동발달센터 우리아이발달·심리상담센터 원민우아동청소년발달센터 임지연 언어심리 ABA (주)엔스텝 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	고운드림케어 미소맘 흥성지사 에스엠천사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주)동부케어
조건부 인증 제공기관 (1)		참사랑어머니회 김해지점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는 인증 신청기관 중 적격기관 없어 인증 미부여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으로, 오늘 시범 인증을 받은 14개 기관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며,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www.kc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증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라며,
- “품질인증이 가능한 영역을 계속 확장해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2.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3.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기준

붙임 1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인증번호	지역	기관명	대표자	인증기간 (시작~종료)	비고
제2022-01	경기	리엔리 언어심리학습치료센터	이조영	'22.12.23.~ '25.12.22.	
제2022-02	강원	마음샘 언어심리센터	심재진	'22.12.23.~ '25.12.22.	
제2022-03	경기	성장놀이터 티움	이선아	'22.12.23.~ '25.12.22.	
제2022-04	광주	에셀나무예술상담센터	이정은	'22.12.23.~ '25.12.22.	
제2022-05	충남	엘림아동발달센터	이종호	'22.12.23.~ '25.12.22.	
제2022-06	부산	우리아이발달·심리상담센터	박정희	'22.12.23.~ '25.12.22.	
제2022-07	전남	원민우아동청소년발달센터	원민우	'22.12.23.~ '25.12.22.	
제2022-08	세종	임지연 언어심리 ABA	임지연	'22.12.23.~ '25.12.22.	
제2022-09	경기	(주)엔스텝	김지아	'22.12.23.~ '25.12.22.	
제2022-10	경기	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	송수정	'22.12.23.~ '25.12.22.	
제2022-11	세종	고운드림케어	정경태	'22.12.23.~ '25.12.22.	
제2022-12	경기	동부케어	진락천	'22.12.23.~ '25.12.22.	
제2022-13	충남	미소맘 흥성지사	박정현	'22.12.23.~ '25.12.22.	
제2022-14	경기	에스엠천사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유현선	'22.12.23.~ '25.12.22.	
-	경남	참사랑어머니회 김해지사	김현숙	-	조건부 인증

붙임 2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

* 기관 관리 및 경영, 재무(회계), 인적 자원, 안전 예방, 서비스 운영 등

- (사업목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사업의 타당성 및 품질인증 기준에 대한 적절성 확인을 통해 사업 고도화 방안 마련
- (사업기간) 2022. 9월 ~ 2022. 12월(4개월)
- 사업 내용
 - (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 * 인증신청 기준: 공고일 기준 최소 3년 이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3기 사회서비스 품질평가('19~'21)의 원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 (기준)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
 - (절차) 인증신청 → 자체심사(신청기관 제출) → 서면심사 → 현장방문심사 → 인증여부결정(인증심의위원회, 재심위원회) → 결과 통보 → 현판수여식
 - (혜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 수여,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및 홍보 지원 등
 - *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회서비스 인증기관 명단 공개 및 배포
 - (유효기간) 인증심의 결과 통보 후 3년
 - (사후관리) 인증 자격의 유지·관리, 인증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 * 사후관리 및 공식적인 민원·제보에 따라 중대한 사안 발생시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

붙임 3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기준

영역	품질인증항목(12)		품질인증지표(32)
1. 서비스 운영	1.1	서비스 운영 규정의 확립	1.1.1 서비스 운영 규정의 체계
			1.1.2 서비스 운영 규정의 공유
	1.2	서비스 기반구조의 운영	1.2.1 서비스 제공환경의 적합성
			1.2.2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관리
			1.2.3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의 운영
	1.3	서비스 제공과정의 운영	1.3.1 이용자 중심 서비스 계획 수립
			1.3.2 계획기반 서비스 실행 관리
			1.3.3 목표기반 서비스 모니터링
			1.3.4 서비스 종결 관리
2. 인적 자원	2.1	인사관리체계의 운영	2.1.1 인사관리규정의 적절성
			2.1.2 인력 모집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
			2.1.3 근무평정체계의 운영
	2.2	복무관리체계의 운영	2.2.1 복무관리규정의 적절성
			2.2.2 종사자 권리보호 및 고충처리
3. 안전·예방	3.1	시설안전관리체계의 운영	3.1.1 시설안전관리규정 운영의 적절성
			3.1.2 시설안전관리체계의 운영
			3.1.3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
	3.2	위험예방체계의 운영	3.2.1 위험예방체계의 적절성
			3.2.2 위험예방체계의 이해관계자 공유
	3.3	정보관리체계의 운영	3.3.1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운영
			3.3.2 문서 및 기록 관리지침의 운영
4. 재정 건전성	4.1	재무(회계) 관리 체계의 확립	4.1.1 회계규칙(규정) 운영의 적절성
			4.1.2 회계처리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4.2	재무(회계) 책무성 강화	4.2.1 회계결산 체계의 운영
			4.2.2 회계감사 체계의 운영
5. 경영 관리	5.1	기관운영규정의 운영	5.1.1 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운영규정 확립
			5.1.2 사회서비스 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
			5.1.3 사회서비스 기관의 재정 및 회계 관리
			5.1.4 사회서비스 기관의 시설안전 및 정보관리
			5.1.5 사회서비스 기관의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5.2	PDCA기반 사업계획의 운영	5.2.1 기관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5.2.2 사업계획의 실행 및 평가